

[붙임] 2025년 「공예 유통 프로모션 지원」 사업 예산편성 기준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을 기준하여 예산 편성
- 총 편성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은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내에서만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직접경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업체 별도 부담
- 자부담액은 총 예산대비 20% 이상으로 편성 필수
- 지원신청 예산대비 5% 이상 마케팅 홍보비 편성 필수
- 지원신청 예산규모별 회계검사수수료 편성 필수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2020.12)으로,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사이트 참조 <http://artinsure.kawf.kr/>
- 창작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문체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예산 활용은 내역에 따라 단건 500만원 이상 활용 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단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 및 계약 체결이 필요하니 유의하여 편성

세목	세부항목	용도										
일용임금	일용임금	- 단순 보조 인력, 행사 및 공연의 보조인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사례비(한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일용직 (단순노무)</td> <td>8.5만원/일</td> <td>[참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의무 발생 시 신고 및 납부 ※ 원천세 8.8%, 고용보험료: 0.9% ※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가활용비로 편성 및 지급</p>	구 분	사례비(한도)	비 고	일용직 (단순노무)	8.5만원/일	[참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구 분	사례비(한도)	비 고										
일용직 (단순노무)	8.5만원/일	[참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p>★ 총 지원신청 예산대비 20~30% 이내 책정 가능 - 1인의 경우 20% 이하, 2인 이상의 경우 30%까지 가능</p> <p>■ 기획자 사례비 - 기획 인건비(대표자/외부기획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월 임금</th> </tr> </thead> <tbody> <tr> <td>책임연구원 (1등급 기준)</td> <td>월 3,705,904원</td> </tr> <tr> <td>연구원 (2등급 기준)</td> <td>월 2,841,638원</td> </tr> <tr> <td>연구보조원 (3등급 기준)</td> <td>월 1,899,539원</td> </tr> <tr> <td>보조원</td> <td>월 1,424,702원</td> </tr> </tbody> </table> <p>※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 ※ 원천세(기타/사업소득/고용보험)* 공제 후 지급 필수 *사업소득 원천세 3.3%, 기타소득 원천세 8.8%, 예술인(문화예술용역) 고용보험 0.9% ※ 본 기준단가는 1개월 기준 투입률 50%로 산정한 것이며, 투입률이 다를 경우 본 임금을 기준으로 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p> <p>■ 원고료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준용 ※ 지급 시 원천세(기타/사업소득) 공제 후 지급</p> <p>■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 ※ 지급 시 원천세(기타/사업소득) 공제 후 지급</p>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1등급 기준)	월 3,705,904원	연구원 (2등급 기준)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3등급 기준)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1등급 기준)	월 3,705,904원											
연구원 (2등급 기준)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3등급 기준)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p>■ 강의료/발표 및 토론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문가 등급기준</th> <th>2시간 기준단가</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전·현직 고위공무원 및 대학 정교수급 이상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td> <td>300,000원</td> </tr> <tr> <td>2등급</td> <td>·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 법인 근무 5년 이상 재직자 및 초청강사 ·대학 부교수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td> <td>200,000원</td> </tr> <tr> <td>3등급</td> <td>·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시간 기준의 50% 추가 지급 적용 ※ 1인 1일 1회 기준단가로, 이중지급 불가 ※ 부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은 위 단가 적용 ※ 위 단가 적용이 어려운 인력은 사전협의하여 별도 책정 가능 ※ 지급 시 원천세(기타/사업소득) 공제 후 지급 필수</p>	구분	전문가 등급기준	2시간 기준단가	1등급	·전·현직 고위공무원 및 대학 정교수급 이상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00,000원	2등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 법인 근무 5년 이상 재직자 및 초청강사 ·대학 부교수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200,000원	3등급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구분	전문가 등급기준	2시간 기준단가																			
1등급	·전·현직 고위공무원 및 대학 정교수급 이상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00,000원																			
2등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 법인 근무 5년 이상 재직자 및 초청강사 ·대학 부교수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200,000원																			
3등급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홍보 마케팅비	<p>★ 총 지원예산 대비 5%이상 편성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홍보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 필수 편성예산의 경우 단순 사진촬영비, 인쇄물 제작비는 제외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다수의 물품비 ※ 보조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사무용품 포함) 구입 금지 																				
운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도록, 작품 등의 운송료(택배) 																				
회계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필수) 민간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법인 검사보고서 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신청 사업비 규모</th> <th>수수료 기준액</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미만</td> <td>282,000원</td> </tr> <tr> <td>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td> <td>336,000원</td> </tr> <tr> <td>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td> <td>365,000원</td> </tr> <tr> <td>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td> <td>505,000원</td> </tr> <tr> <td>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td> <td>547,000원</td> </tr> <tr> <td>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td> <td>590,000원</td> </tr> <tr> <td>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td> <td>632,000원</td> </tr> <tr> <td>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td> <td>674,000원</td> </tr> <tr> <td>1억원이상 2억원미만</td> <td>848,000원</td> </tr> </tbody> </table> <p>※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금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 적용 (부가세 포함)</p>	지원신청 사업비 규모	수수료 기준액	3천만원미만	282,000원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원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원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원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원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원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원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원
지원신청 사업비 규모	수수료 기준액																				
3천만원미만	282,000원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원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원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원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원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원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원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원																				
임차료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임대료 등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상 필요한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연출기획, 설치 및 철수, 케이터링 등 																			

	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비	-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 동영상 제작 등
	홍보대행 용역비	- 홍보기획, 제작, 배포 등 홍보일체 또는 일부분을 위탁하는 경우 ※ 단순 홍보물 제작이나, 배포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국내여비	출장 교통비	- 행사장이 지역 외 소재지인 경우 이동 교통수단(철도, 고속버스 등) 이용료 ※ 택시이용료, 자차 이용료(통행료, 유류비) 제외